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디지털미디어교육의 활성화·지원 근거 마련 〉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60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총괄 검토	3
가. 발의 배경	3
나. 법률안의 구성체계	6
다. 주요 검토사항	8
2. 정의	12
3. 기본원칙,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6
4. 디지털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18
5.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	20
6. 지원, 평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26
7. 부칙	2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 13.

다. 회부연월일 : 2025. 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미디어의 역할이 단순한 정보전달이나 여론형성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락 기능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불법·유해정보의 유통 속도와 사회적 파급력이 방송에 비견될 정도로 커져 있는 상황임.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활용능력,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미디어의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교육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디지털미디어교육”을 디지털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능력 증진, 민주적 소통능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디지털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디지털미디어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시행기관이 매년 소관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 마. 방송통신위원회와 시행기관은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디지털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발의 배경

-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디지털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습득이나 비대면 소통 등이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서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미디어의 역할도 단순한 정보전달이나 여론형성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락 기능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공간의 압축적 활용, 새로운 경제동력의 창출 등 미디어의 유용성이 증대되는 한편,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허위·불법·유해정보의 유통, 사이버폭력 등 위험도 증가하는 상황임.
- 일반 국민의 건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생활을 신장하기 위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과적 활용 및 각종 위험에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역량¹⁾의 향상이 요구되는 시기이나, 현재 디지털미디어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미디어 역량 개념이나 그 경계가 불분명함에 따라 부처별로 개별법에 근거하여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1) 미디어역량이란 미디어에 원활하게 접근·이용하고, 비판적으로 이해·분석하며, 미디어로 자유롭게 표현·소통하고, 그 결과에 대한 권리행사와 책임 등 수준 향상을 위해 지식·기술·태도·가치를 결집하는 능력을 말함(관계부처 합동,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 2024.8.27.).

<부처별 미디어교육 추진 근거>

- (방통위) 방송법 제90조의2, 제94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7조, 21조
- (문체부) 신문법 제35조, 지역신문법 제15조, 문화예술교육법 제15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 영화비디오법 제25조, 저작권법 제2조의2, 게임산업법 제12조의4
- (교육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
- (과기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 제54조, 제62조 등

자료: 관계부처 합동,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 2024.3.

- 제정안은 디지털미디어교육 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미디어 활용능력과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의 의사소통능력과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향상하며, 건전한 미디어문화 향유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정안의 목적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미디어의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참고로, 디지털미디어를 포함한 미디어 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등에 따라 제20대, 제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그 주요 내용 비교는 다음과 같음.²⁾

2) 이외에도 2007.4.4. 미디어교육 진흥법안(이경숙의원 대표발의), 2012.8.3. 미디어교육 지원법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 2013.9.17. 미디어교육 지원법안(김희정의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제20대·제21대 국회 미디어교육 관련 제정안과의 비교>

구 분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련 법률안 (20대국회)	미디어교육 지원법안 (20대국회)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대국회)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련 법률안 (21대국회)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21대국회)	디지털미디어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련 법률안 (22대 국회)
대표발의		유은혜의원 (2018.5.17.)	신경민의원 (2018.5.18.)	정필모의원 (2020.8.24.)	권인숙의원 (2021.7.14.)	정경희의원 (2022.11.29.)	이훈기의원 (2025.1.13.)
소관 상임위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정의		열거 방식 ·방송통신뉴스등 ·영화, 게임물 ·대통령령	개념 정의	개념 정의	열거 방식 ·방송통신뉴스등 ·인터넷방송 ·대통령령	열거 방식 ·방송통신뉴스등 ·인터넷방송 ·대통령령	개념 정의
주관 위원회	설 치	국무총리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통신 위원회	사회부총리	사회부총리	방송통신 위원회
	위 원	25명	18명	18명	25명	25명	18명
주관기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위원회
계획		미디어교육 기본계획	미디어교육 종합계획	미디어교육 종합계획	미디어교육 기본계획	미디어교육 기본계획	디지털 미디어교육 기본계획

나. 법률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의 제명은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본칙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은 디지털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디지털미디어교육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미디어의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하여 디지털미디어 및 디지털미디어교육 등에 대한 정의규정과 기본원칙 마련, 디지털미디어교육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마련, 디지털미디어교육 컨트롤타워 및 추진체계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제정안 조문 체계 >

제1조 목적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2조 정의	제10조 회의 등
제3조 디지털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	제11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12조 디지털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3조 디지털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 디지털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4조 디지털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제7조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	제15조 디지털미디어교육 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8조 위원회의 구성	

< 제정안의 디지털미디어교육 추진체계 >

목 적

- ◆ 디지털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 ◆ 디지털미디어의 건전한 이용을 촉진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디지털미디어교육의 원칙 등

- ◆ 디지털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 3)
 - 모든 국민의 디지털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 규정
 - 실용성, 정치적 목적 이용 금지, 특정인·특정단체 이익 옹호 금지
- ◆ 국가 등의 책무(§ 4)
-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 ◆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11)

추진체계

<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 >

-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7①) -

- ◆ 구성(§ 8)
 -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위원(18명): 당연직(교육부·문체부차관, 방통위 상임위원 등), 위촉직(국회 추천6, 장관 추천6(교육부2·문체부2·방통위2))
- ◆ 심의사항(§ 7②)
 - 디지털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변경, 평가지침 마련·평가
 - 정책의 소관 조정·기관 간 협력
 - 관련 연구 및 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 기타
 - 위원 결격사유(§ 9), 회의 등(§ 10)

< 주관기관 >

- 정책 수립·사업 추진 총괄 -

- ◆ 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 기능
 - 기본계획 수립(§ 6)
 - 정책·사업의 평가(§ 12)
 - 전문인력 양성 노력(§ 13)
 -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15)

< 시행기관 >

- 정책·사업 실시(§ 2⑤) -

- ◆ 주체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특·광·도),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 ◆ 기능
 - 시행계획 수립·위원회 제출(§ 6④)
 - 전문인력 양성 노력(§ 13)
 -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14)
 -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15)

다. 주요 검토사항

□ 먼저, 동 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제정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디지털미디어의 경계가 불분명함에 따라 부처별로 개별법에 근거하여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정안은 기존의 여러 법률에서 규율하던 것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현제도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제정안이 규율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다른 법률과의 중첩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은 입법 경제성의 측면에서 고려할 점으로 보임.

- 가령, 제정안은 “디지털미디어”를 정보의 형태를 불문하고 방송통신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중이 정보를 전달·소통하는 내용 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문학, 미술, 영화, 만화 등 여러 문화컨텐츠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된다는 점에서 이들 또한 디지털미디어교육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들은 문화컨텐츠에 해당되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이들을 활용한 교육에 대해 규율하며, 동 법에서는 문체부 소속의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를 통한 종합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 즉, 정보전달이 되는 기술방식(방송통신이나 정보통신망)에 중점을 두어 판단한다면 “디지털미디어교육”의 대상이 되지만, 정보전달의 내용(문화컨텐츠)에 중점을 두어 판단한다면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다음으로, 디지털미디어교육의 총괄기관인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의 신설·소관 등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디지털미디어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기타 중앙행정기관은 시행기관으로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의 신설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³⁾에서 중복 위원회나 유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이므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위원회의 설치보다는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방통위·문체부·교육부 등에 디지털미디어교육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의 소관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레거시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의 구분이 어려워 디지털미디어교육에 대한 정책만 법으로 규정할 경우 정책 공백이나 기존 정책 간 충돌이 우려되고 모든 미디어를 아우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부처 간 조정역할은 국무조정실 또는 교육부(사회부총리)가 주관하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 다수의 미디어와 독서 정책을 관장하는 문체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이에 대해 **방통위**는 디지털기술 발달에 따라 시청자의 미디어 이용행태가 디지털미디어로 전환되고 있고, 딥페이크 등 유해 콘텐츠의 신속한 전달 등 디지털미디어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미디어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기존에도 방통위 주관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발표⁴⁾해왔다는 의견임.

□ 미디어 교육의 소관 문제는 이전부터 반복되어 온 주요 쟁점으로, 이전 논의에서도 소관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왔으며,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

4) ※ 방통위 주관으로 문체부·과기부·교육부 등과 협력하여 미디어교육 관련 범부처 계획 수립

▶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수립 및 사회관계장관회의 상정·발표(‘20.8월)

▶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 수립 및 사회관계장관회의 상정·발표(‘24.3월)

간 소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전 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2019년 6월부터 8월 까지 ‘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 TF’를 구성하여 미디어교육의 시행 및 추진체계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당시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 TF’ 제안내용(2019.8.)>

- (추진체계 미디어교육정책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미디어교육위원회 산하에 학교미디어교육 분과위원회, 사회미디어교육 분과위원회를 두고 업무지원을 위해 사무처를 운영한다.
 - 미디어교육위원회(이하 미교위)는 과기부, 문체부, 교육부, 방통위 등에서 관련 전문가를 추천받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하 생략)

자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백서」, 2022.4., p.362

- 기존에 발의되었던 미디어교육 관련 제정안에서도 국무총리나 사회부총리, 방통위, 문체부 등으로 그 소관이 다양하게 제시됨.
 - 최민희(’12)·신경민(’18)·정필모(’20)·이훈기(’25)의원안은 방통위, 이경숙(’07)·김희정(’13)의원안은 문체부, 권인숙(’21)·정경희(’22)의원안은 사회부총리, 유은혜의원안(’18)은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디지털미디어교육에 대한 소관 문제는 기존 미디어 분야에서의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에서 이어지는 문제로 생각되며, 동 제정안의 입법 논의에서는 부처 등 관련 주체 간의 소관에 대한 합

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디지털미디어”, “디지털미디어교육” 등 이 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미디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중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도구·수단·행위 또는 그 내용 전반을 말하며 정보 형태를 불문한다.
2. “**디지털미디어교육**”이란 디지털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능력 증진, 민주적 소통능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디지털미디어교육시설**”이란 디지털미디어교육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디지털미디어 관련 사업자**”란 디지털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시행기관**”이란 디지털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도교육청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교육 주제 및 내용으로 사용되는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제정안의 정의를 살펴보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5)에 따

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

른 방송통신(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전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중이 직·간접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도구·수단·행위 또는 그 내용 전반을 말하며 정보의 형태를 불문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TV, 라디오와 같은 레거시 미디어⁶⁾뿐만 아니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방송통신 관련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SNS, OTT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봄.

○ 반면, 제정안의 규율대상인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규정은 넓은 범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 규정과의 중첩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입법 논의 시 염두 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현재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만화 등 여러 문화컨텐츠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또한 동 제정안에서 규율하는 디지털미디어교육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이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⁷⁾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에 해당되는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⁸⁾은 이들을

6) 전통적인 미디어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TV(지상파, 케이블)·라디오·신문 등이 해당됨.

7)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동 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하며, 동 법에서는 문체부 소속의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를 통한 종합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 즉, 정보전달이 되는 기술방식(방송통신이나 정보통신망)에 중점을 두어 판단한다면 “디지털미디어교육”의 대상이 되지만, 정보전달의 내용(문화컨텐츠)에 중점을 두어 판단한다면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외에도, 교육부 소관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9)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과기정통부 소관의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4조제2항10) 정보문화 교육 등 리터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이하 생략)

- 9)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① 학교 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
 2.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
 3.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 향상
 4.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정보통신매체 또는 정보통신기기에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아니하도록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 교육과 관련되는 규정이 산재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부처별 미디어교육 추진 근거>

부 처	근거법	주요내용
방통위	방송법	○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제90조의2) ○ 방송전문인력 양성 지원(제94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방송통신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제7조) ○ 방송통신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제21조)
문체부	신문법	○ 언론진흥기금의 용도(제35조)
	지역신문법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용도(제15조)
	문화예술교육법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제15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지원 등(제12조)
	영화비디오법	○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제25조)
	저작권법	○ 저작권 보호 시책 수립, 교육 등(제2조의2)
	게임산업법	○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제12조의4)
교육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활성화 기본법	○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실시 등(제10조)
과기부	지능정보화기본법	○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제50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교육(제54조) ○ 지능정보사회 윤리 확립 교육(제62조)

자료: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관계부처 합동, 2024.3.)을 바탕으로 재작성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미디어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의 운영이나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소관을 조정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기본원칙,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안 제3조부터 제5조)

- 안 제3조에서는 디지털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 안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 제5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제3조(디지털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디지털미디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디지털미디어교육은 국민이 디지털미디어의 기능과 효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디지털미디어교육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미디어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디지털미디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디지털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디지털미디어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미디어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 제3조는 모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디지털미디어교육에서의 실용성 강조, 정치적 목적이나 사익의 옹호를 위한 교육의 금지 등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이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자유권적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사회권적 권리)로 해석됨.¹¹⁾

- 디지털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매체를 통한 정보의 수집 및 전달이 시민·정치적 권리의 주요 기반으로써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으로, 제정안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¹²⁾의 교육권을 ‘디지털미디어교육’ 분야에서 구체화하고 있음.
 - 마찬가지로 교육의 중립성, 실용성 등 디지털미디어교육의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미디어교육이 그 본래 목적에 따라 기능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는 디지털미디어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 동 법이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규정하며, 다른 법률 사이의 해석 및 집행상 모순이나 저촉을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미가 있음.

11) 헌법재판소 2017.12.28. 선고, 2016헌마649

12)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디지털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6조)

- 제정안 제6조는 디지털미디어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6조(디지털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디지털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미디어교육의 기본방향
2.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접근·활용능력, 이해·비평능력, 사회참여·소통능력 및 디지털미디어 윤리에 관한 사항
3.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디지털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디지털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디지털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행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디지털미디어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 제6조제1항은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교육행정은 시·도교육감이 담당하고 있고,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공공기관이 주요 교육기관으로 디지털

미디어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제정안 제2조제5호에서 이들을 “시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기관의 장”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제정안	수정의견
제6조(디지털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디지털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6조(디지털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u>시행기관의 장</u> 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디지털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안 제7조부터 제10조)

- 제정안 제7조는 디지털미디어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통위 소속으로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규정함.
- 제정안 제8조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 임기, 소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구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제정안 제9조는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며, 제10조는 회의의 소집, 의사·의결정족수, 회의공개원칙을 규정함.

제7조(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 ① 디지털미디어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디지털미디어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3. 디지털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정책의 소관 조정 및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디지털미디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디지털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디지털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이 공동으로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차관
2.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명

④ 위원회의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디지털미디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한다)

2.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⑤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5.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정안 제7조 및 제8조와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위원회를 방통위 소관으로 두는 것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³⁾

○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위원회를 방통위 소속으로 두고있으며, 관계 부처인 교육부, 문체위, 방통위의 차관급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국회 관련 상임위 및 교육부장관, 문체부장관, 방통위원장이 위촉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업 체계 마련에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문체부는 레거시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의 구분이 어려워 디지털미디어교육에 대한 정책만 법으로 규정할 경우 정책 공백이나 기존 정책 간 충돌이 우려되고 모든 미디어를 아우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부처 간 조정역할은 국무조정실 또는 교육부(사회부총리)가 주관하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 다수의 미디어와 독서 정책을 관장하는 문체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방통위는 디지털기술 발달에 따라 시청자의 미디어 이용행태가 디지털미디어로 전환되고 있고, 딥페이크 등 유해콘텐츠의 신속한 전달 등 디지털미디어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미디

1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서술한 [다. 주요 검토사항](pp.8~10)의 내용을 참고.

어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기존에도 방통위 주관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발표¹⁴⁾ 해왔다는 의견임.

□ 제정안 제9조의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무원 결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과의 균형성이나 공무담임권 침해 소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은 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로 제9조제4호 및 제5호에 성범죄 이력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음.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5.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디지털미디어교육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는 정부위원회라는 점에서 성범죄 이력을 결격사유로 두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수준에 대해서는 유사 입법례 등을 통하여

14) ※ 방통위 주관으로 문체부·과기부·교육부 등과 협력하여 미디어교육 관련 범부처 계획 수립
▶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수립 및 사회관계장관회의 상정·발표(’20.8월)
▶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 수립 및 사회관계장관회의 상정·발표(’24.3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¹⁵⁾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해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형·벌금형·치료감호 선고나 파면·해임처분을 받고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 어린이집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교육공무원의 경우 성인 대상 성범죄(100만원 이상)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형 또는 치료감호)를 저지른 경우 영구히 해당 직역으로부터 배제하고

15)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있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결격사유를 두고 있으며,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가 이와 동일한 수준임.

- 한편,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¹⁶⁾ 이에 따라 2024.12.31.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개정 한 사례가 있음.
- 제정안의 위원회 위원에 대한 성범죄 관련 결격기간의 적정성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둘 것인지, 교육공무원 등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결격 기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평등이나 형평성 측면의 문제나 과잉금지 원칙위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16) 2020헌마1605, 2020헌마1181

6. 지원, 평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안 제11조부터 제15조)

- 제정안 제11조부터 제15조는 국가 및 지자체의 디지털미디어교육에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안 제11조)과 디지털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방통위와 시행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노력(안 제13조), 디지털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안 제14조), 관련 전문기관과 민간단체 지원근거 마련(안 제15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디지털미디어 관련 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디지털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지털미디어교육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디지털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송통신위원회와 시행기관은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디지털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① 시행기관은 국민에게 다양한 디지털미디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디지털미디어교육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방송통신위원회와 시행기관은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와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또는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민간단체 간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정안은 안 제6조에서 디지털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의 주체를 방통위로 하고 있고, 평가지침 마련과 평가결과 공개, 기본계획 수립에의 반영 등의 주체 또한 방통위로 하고 있어 내적 정합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 제정안 제11조와 제15조는 디지털미디어교육의 시행과 관련해 지원근거를 두고 있는데, 두 조문의 취지와 목적, 내용 등이 유사하므로 두 개를 통합하여 두는 것이 보다 간결해보이며, 지원 대상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1조는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나 디지털미디어 관련 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경우 디지털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다 범위를 폭넓게 하여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또한 “디지털미디어 관련 사업자”¹⁷⁾는 디지털미디어교육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지원대상을 “디지털미디어교육시설”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보임.

17) 안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디지털미디어 관련 사업자”란 디지털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함.

- 안 제15조에서 “전문기관”이나 “민간단체”는 관련 규정이 없어 그 의미나 대상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디지털미디어 교육시설”이나 “디지털미디어 관련 사업자”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기타 두 조항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여 일괄하여 규정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제정안	수정의견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디지털미디어 관련 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디지털미디어교육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방송통신위원회와 시행기관은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와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또는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민간단체 간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미디어교육의 활성화 지원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기관이나 디지털미디어교육시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기관이나 디지털미디어교육시설 또는 디지털미디어 관련 사업자 간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7.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법률의 시행을 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다만,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경우 연초에 수립하고 연 단위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선행 입법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적용례를 두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2026년계획부터 적용한다.

<적용례 관련 선행입법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부칙 <법률 제7496호, 2005. 5. 18.> 부칙 <법률 제7496호, 2005. 5. 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2006년계획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문 의 처

02)6788-5226